

2020년 개정 의료법규 자료집

9월 개정/2021년 1월 시행반영

Contents

• 의료법	3
• 보건의료기본법	22
• 국민건강증진법	23
• 지역보건법	2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 검역법	79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3
• 혈액관리법	86
• 국민건강보험법	8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92

의료법

<p>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p> <p>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⑤ (생략)</p> <p>⑥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p> <p>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6.5]</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신 설></p>	<p>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p> <p>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p> <p>[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6.5]</p>
<p>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p> <p>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1.·2. (생략)</p> <p>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p> <p>②·③ (생략)</p>	<p>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p> <p>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6조(조산사 면허)</p> <p>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p>제6조(조산사 면허)</p> <p>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7조(간호사 면허)</p> <p>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p>② (생략)</p>	<p>제7조(간호사 면허)</p> <p>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진단서 등)</p> <p>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 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출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출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출 수 있다.</p> <p>②~⑤ (생략)</p>	<p>제17조(진단서 등)</p> <p>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 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출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출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출 수 있다.</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②~⑤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17조의2(처방전)

-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 2019.8.27, 시행 : 2020.2.28]

제21조(기록 열람 등)

- ①·② (생략)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략)

<신 설>

7.~15. (생략)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

제21조(기록 열람 등)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현행과 같음)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7.~15. (현행과 같음)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

<p>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p> <p><신 설></p> <p>④ (생 략)</p> <p><신 설></p>	<p>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제22조(진료기록부 등)</p> <p>①~③ (생 략)</p> <p><신 설></p>	<p>제22조(진료기록부 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p> <p>[신설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p> <p>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p> <p>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신 설></p>	<p>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 신설 : 2019.8.27, 시행 : 2020.2.28]</p>
<p><신 설></p>	<p>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p> <p>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3조의3에서 이동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33조(개설 등)</p> <p>①·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p>	<p>제33조(개설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p>

<p>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p> <p><신 설> <신 설></p> <p>⑤·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3. (생 략) <신 설></p> <p>⑧~⑩ (생 략)</p>	<p>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p> <p>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⑤·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p> <p>[신설 : 2019.8.27, 시행 : 2020.2.28] ⑧~⑩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p> <p>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p> <p>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 2020.3.4, 시행 : 2020.9.5]</p>
<p>제36조(준수사항)</p> <p>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7. (생 략)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p> <p>9.~11. (생 략) <신 설> <신 설></p>	<p>제36조(준수사항)</p> <p>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7. (현행과 같음)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9.~11. (현행과 같음)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 2019.8.27, 시행 : 2020.2.28]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p>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① (생략)
-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⑤ (생략)

<신설>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 ① (현행과 같음)
- <삭제>**
[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 그 밖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신 설〉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 ⑦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제47조(병원감염 예방)

-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

<p>제58조(의료기관 인증)</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58조(의료기관 인증)</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삭제></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p> <p>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p> <p>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p>	<p>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p> <p>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p> <p>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p>
<p>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p>

	<p>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p>
<p>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 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 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2. (생 략)</p> <p>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신 설></p> <p>③ (생 략)</p>	<p>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 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 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 설팅 지원</p> <p>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p>
<p>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 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p>	<p>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p> <p>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p> <p>[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p>
<p><신 설></p>	<p>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1 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 을 받은 경우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 된 경우 4.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p>

	<p>지 못하게 된 경우 5.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87조의9에서 이동 : 2020.3.4, 시행 : 2020.9.5]</p>
<p><신 설></p>	<p>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p> <p>①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p> <p>③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인증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 인증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⑦ 인증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⑧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p>
<p>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p> <p>②·③ (생략)</p>	<p>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신설></p>	<p>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본조 신설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63조(시정 명령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63조(시정 명령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p> <p>1.~4의2. (생략)</p> <p>5. 제33조제5항·제9항·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단서 신설></p> <p><신설></p> <p>6.~9. (생략)</p> <p>②·③ (생략)</p>	<p>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p> <p>1.~4의2. (현행과 같음)</p> <p>5. 제33조제5항·제7항·제9항·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p> <p>6.~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p> <p>5.·6. (생략)</p> <p>② (생략)</p>	<p>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p> <p>5.·6.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6.5]</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6조(자격정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p> <p>1.~8. (생략)</p> <p>9.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p> <p>10. (생략)</p> <p>②~⑥ (생략)</p>	<p>제66조(자격정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p> <p>1.~8. (현행과 같음)</p> <p>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p> <p>10. (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67조(과징금 처분)</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p>	<p>제67조(과징금 처분)</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p>

<p>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p> <p>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p>1.~4. (생략)</p> <p>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6. (생략)</p> <p>②~⑤ (생략)</p>	<p>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p> <p>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6.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80조의3(준용규정)</p> <p>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p>	<p>제80조의3(준용규정)</p> <p>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83조(경비 보조 등)</p> <p>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p> <p>2. (생략)</p>	<p>제83조(경비 보조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p> <p>2.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제84조(청문)</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84조(청문)</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p> <p>4.~6.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p> <p>4.~6.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7조의2(벌칙)</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신설></p> <p>2. (생략)</p>	<p>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87조의2(벌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6.5]</p> <p>2. (현행과 같음)</p>
<p>제88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p> <p>2. 제23조의3을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3. (생략)</p>	<p>제88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3. (현행과 같음)</p>
<p>제88조의2(벌칙)</p> <p>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88조의2(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0조를 위반한 자</p> <p>2.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p>

<p>제89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p> <p>2.~4. (생략)</p>	<p>제89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2.~4. (현행과 같음)</p>
<p>제90조(벌칙)</p> <p>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90조(벌칙)</p> <p>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91조(양벌규정)</p> <p>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1조(양벌규정)</p> <p>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개정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92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p> <p>1의3.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p> <p><신설></p> <p>2.~5. (생략)</p>	<p>제92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p> <p>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p> <p>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p> <p>2.~5. (현행과 같음)</p> <p>[개정 및 신설 : 2019.8.27, 시행 : 2020.2.28]</p>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략)
③·④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보건의료기본법

<p>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생략)</p>	<p>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p> <p>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국민건강증진법

<p>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p> <p>①~⑤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p> <p>①~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p> <p>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설 : 2020.4.7, 시행 : 2020.7.8]</p>
<p><신설></p>	<p>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p> <p>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본조 신설 : 2020.4.7, 시행 : 2020.7.8]</p>
<p><신설></p>	<p>제12조의6(청문)</p> <p>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본조 신설 : 2020.4.7, 시행 : 2020.7.8]</p>
<p>제16조(국민영양조사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p> <p>②~④ (생략)</p>	<p>제16조(국민영양조사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p> <p>②~④ (생략)</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p> <p>①~④ (생략)</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⑥·⑦ (생략)</p>	<p>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1.1]</p>
<p>제27조(지도·훈련)</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7조(지도·훈련)</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1조의2(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4.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31조의2(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p> <p>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p> <p>[신설 : 2020.4.7, 시행 : 2020.7.8]</p>
<p>제34조(과태료)</p> <p>①~④ (생략)</p> <p><신설></p>	<p>제34조(과태료)</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지역보건법

<p>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p> <p>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p> <p>1.~4. (생략)</p> <p>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사. (생략)</p> <p><신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p> <p>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사. (현행과 같음)</p> <p>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p> <p>1.~4. (생략)</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p> <p>6.~15. (생략)</p> <p>②~④ (생략)</p>	<p>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p> <p>6.~15. (현행과 같음)</p> <p>②~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9.1.15, 시행 : 2020.1.15]</p>
<p>제21조(기금의 사용)</p> <p>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p> <p>1.~8. (생략)</p> <p><신설></p>	<p>제21조(기금의 사용)</p> <p>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p> <p>1.~8. (현행과 같음)</p> <p>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p> <p>[신설 : 2019.8.27, 시행 : 2020.2.28]</p>
<p><신설></p>	<p>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 신설 : 2019.8.27, 시행 : 2020.2.28]</p>
<p>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p> <p>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p> <p>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7.1]</p>
<p>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p> <p>① (생략)</p> <p>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p> <p>1. (생략)</p> <p>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p>	<p>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p>

<p>3. (생략)</p> <p>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p> <p>1. (생략)</p> <p>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p> <p>④·⑤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략)</p> <p>③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생략)</p> <p><신설></p>	<p>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개정 : 2020.4.7, 시행 : 2020.7.8]</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p> <p>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설 : 2020.4.7, 시행 : 2020.7.8]</p>
<p>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p> <p>① (생략)</p> <p><신설></p>	<p>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p> <p>① (생략)</p> <p>②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7. (생략) <p>②~④ (생략)</p>	<p>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7. (현행과 같음) <p>②~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생략) 3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7. (생략) <p>②~⑤ (생략)</p>	<p>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현행과 같음) 3의2.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7. (현행과 같음) <p>②~⑤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4.7, 시행 : 2020.7.8]</p>
<p>제57조(과징금)</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제57조(과징금)</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개정 : 2020.3.24, 시행 : 2020.3.24]</p>
<p>제60조(벌칙)</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p><신 설></p> <p><신 설></p>	<p>제60조(벌칙)</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의3.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의4. 제3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3. (생략)

④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개정 및 신설 : 2020.4.7, 시행 : 2020.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단서 신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신 설>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개정 및 신설 : 2018.3.27, 시행 : 2020.1.1]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

- 가. 디프테리아
- 나. 백일해(百日咳)
- 다. 파상풍(破傷風)
- 라. 홍역(紅疫)
-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바. 풍진(風疹)
- 사. 폴리오
- 아. B형간염
- 자. 일본뇌염
- 차. 수두(水痘)
- 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타. 폐렴구균
- <신 설>

4. “제3급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말라리아
- 나. 결핵(結核)
- 다. 한센병
- 라. 성홍열(猩紅熱)
-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 바.~타. (생 략)
- 파. 탄저(炭疽)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개정 및 신설 : 2018.3.27, 시행 : 2020.1.1]

- 가. 결핵(結核)
- 나. 수두(水痘)
- 다. 홍역(紅疫)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百日咳)
-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타. 풍진(風疹)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개정 : 2019.12.3, 시행 : 2020.7.1]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개정 및 신설 : 2018.3.27, 시행 : 2020.1.1]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가. 파상풍(破傷風)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타. (현행과 같음)
- 파. 공수병(恐水病)

- 하. 공수병(恐水病)
-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너. 인플루엔자

-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러. 매독(梅毒)
- 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버. C형간염
-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중(CRE) 감염증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페스트
- 나. 황열
- 다. 뎅기열
- 라. 바이러스성 출혈열
- 마. 두창
- 바. 보툴리눔독소증
- 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자. 신종인플루엔자
- 차. 야토병
- 카. 큐열(Q熱)
- 타. 웨스트나일열
- 파. 신종감염병증후군
- 하. 라임병
- 거. 진드기매개뇌염
- 너. 유비저(類鼻疽)
- 더. 치쿤구니아열
- 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鼻疽)
- 처. 치쿤구니아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및 신설 : 2018.3.27, 시행 : 2020.1.1]

-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梅毒)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침규곤달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

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15. (생략)

<신설>

한다. <단서 삭제>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삭제>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14.·15. (현행과 같음)

-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신 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19. (생 략)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신설 : 2020.3.4, 시행 : 2020.3.4]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18.~19. (현행과 같음)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생략)</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7.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억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p> <p>8.~17. (생략)</p> <p>③·④ (생략)</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p>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억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8.~17.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p> <p>① (생략)</p> <p>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략)</p> <p><신설></p> <p>3.~6. (생략)</p> <p>③ (생략)</p> <p>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신설 : 2020.3.4, 시행 : 2020.6.5]</p> <p>3.~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p> <p>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8조의5(긴급상황실)</p> <p>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의5(긴급상황실)</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p> <p>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p> <p>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단 신설></p> <p>1.~3. (생략)</p> <p>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p> <p>5.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신설></p> <p>③·④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3.4]</p> <p>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1.~3. (현행과 같음)</p> <p>4.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p> <p>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p> <p>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사 등의 신고)</p> <p>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사 등의 신고)</p> <p>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1.·2. (생략)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신설>

②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1.·2. (현행과 같음)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신설 : 2020.3.4, 시행 : 2020.3.4]

②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p>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신고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p>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p>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p>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p> <p>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p> <p>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p>

<p><신 설></p>	<p>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 : 2020.3.4, 시행 : 2020.3.4]</p>
<p>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p> <p>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정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읍장 또는 면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p> <p>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1.~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본감시기관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과**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⑦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생략)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 ⑤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하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 ⑦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3.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1. 질병관리청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2.~9. (현행과 같음)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 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제18조(역학조사)

-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 ④ (생략)

제18조(역학조사)

-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p>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0조(해부명령)</p> <p>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해부는 사망자가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을 갖춘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20조(해부명령)</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해부는 사망자가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을 갖춘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p>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등)

-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6.4]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신 설>

<신 설>

<신 설>

⑤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6.4]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6.4]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2020.3.4, 시행 : 2020.6.4]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

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④ (생략)
-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③·④ (현행과 같음)
-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개정 : 2020.3.4, 시행 : 2020.6.4]
-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p>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6.4]</p> <p>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9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6.4]</p> <p>⑧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9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 : 2020.3.4, 시행 : 2020.6.4]</p>
<p>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p> <p>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p> <p>질병관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p> <p>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내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p>	<p>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p> <p>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p>

<p>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신설></p>	<p>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p> <p>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p> <p>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p> <p>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4조(필수예방접종)</p> <p>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16. (생략)</p> <p>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p> <p>②·③ (생략)</p>	<p>제24조(필수예방접종)</p> <p>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16. (현행과 같음)</p> <p>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5조(임시예방접종)</p> <p>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p>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25조(임시예방접종)</p> <p>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p>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p> <p>① (생략)</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p>	<p>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27조(예방접종증명서)</p> <p>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7조(예방접종증명서)</p> <p>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p> <p>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p> <p>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p> <p>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p> <p>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p>

<p>1.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p> <p>2. (생략)</p>	<p>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p> <p>2.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p> <p>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p> <p>② (생략)</p>	<p>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p> <p>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관 및 실시기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관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관 및 실시기준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관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p>	<p>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p>	<p>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p>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③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제2항제2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내역 제공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내역 제공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3.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생략)
 -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생략)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설 : 2020.3.4, 시행 : 2020.3.4]</p> <p>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 : 2020.3.4, 시행 : 2020.3.4]</p>
<p>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들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p>	<p>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p>④ (생략)</p> <p>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p> <p>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9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p> <p>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39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p> <p>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③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p> <p>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p>	<p>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p> <p>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p>

<p>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p>	<p>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신설></p>	<p>제40조의3(수출금지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3.4]</p>
<p>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p> <p>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p>	<p>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p> <p>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p>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p> <p>[재개정 : 2020.8.12, 시행 : 2020.10.13]</p> <p>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p>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재개정 : 2020.8.12, 시행 : 2020.10.13]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및 신설 : 2020.8.12, 시행 : 2020.10.13]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2020.8.12, 시행 : 2020.10.13]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생략)

6. 생물테러감염병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 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 제1급감염병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삭제>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4.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4.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5. (현행과 같음)

<삭제>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5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⑥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조치를 명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⑨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진찰을 하거나 격리 등을 하는 기관의 지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⑧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⑨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3.4]

<p>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p>	<p>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1.~3. (생략)</p>	<p>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p> <p>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p> <p>4.~6. (생략)</p>	<p>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1.·2. (현행과 같음)</p> <p>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p> <p>4.~6.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1.·2. (생략) <신설></p> <p><신설></p> <p><신설></p> <p>3.~12. (생략) <신설></p> <p>13. (생략)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p> <p>② (생략)</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1.·2. (현행과 같음)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p> <p>[신설 : 2020.8.12, 시행 : 2020.8.12]</p> <p>3.~12. (현행과 같음)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p> <p>[신설 : 2020.8.12, 시행 : 2020.8.12]</p> <p>13. (현행과 같음)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6.5]</p>
<p>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p> <p>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p> <p>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제51조(소독 의무)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소독 의무)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

[개정 : 2020.3.4, 시행 : 2020.6.5]

<p>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신 설></p>	<p>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p> <p>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3.4]</p>
<p>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p> <p>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p> <p>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3.4]</p>
<p>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p> <p>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p> <p>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6.5]</p>
<p>제59조(영업정지 등)</p> <p>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59조(영업정지 등)</p> <p>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제60조(방역관)</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p>	<p>제60조(방역관)</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p>

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방역관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방역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방역관은 같은 항 제8호의 업무도 담당한다.

③~⑤ (생략)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

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② 방역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은 같은 항 제8호의 업무도 담당한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③~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③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

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역학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의 자격·직무·권한·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행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 ④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개정 : 2020.3.4, 시행 : 2020.9.5]
- ⑥ 역학조사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 ⑥ 역학조사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의 자격·직무·권한·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행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p> <p>⑤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p>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p> <p>① 제5군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5군감염병의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③ (생략)</p>	<p>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p> <p>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p>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p> <p>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p> <p>1.~8. (생략)</p> <p><신설></p>	<p>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p> <p>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p> <p>1.~8. (현행과 같음)</p> <p>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p>

<p>9.~11. (생략)</p>	<p>9.~11. (현행과 같음) [신설 : 2020.8.12, 시행 : 2020.8.12]</p>
<p>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6의2. (생략) <신설></p> <p>7.~9. (생략)</p>	<p>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7.~9. (현행과 같음) [신설 : 2020.8.12, 시행 : 2020.8.12]</p>
<p>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6의2. (생략) <신설></p> <p>7.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p> <p>8. (생략) 9.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9의2. (생략) 9의3.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신설></p> <p>10. (생략)</p>	<p>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신설 : 2020.3.4, 시행 : 2020.9.5] 6의3.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7.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8. (현행과 같음) <삭제> [개정 : 2020.8.12, 시행 : 2020.8.12]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개정 및 신설 : 2020.8.12, 시행 : 2020.8.12] 10.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p>

	<p>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2. 제42조에 따른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p> <p>[본조 신설 : 2020.8.12, 시행 : 2020.8.12]</p>
<p>제70조(손실보상)</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p> <p>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p> <p>②~④ (생략)</p>	<p>제70조(손실보상)</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p> <p>[개정 : 2020.8.12, 시행 : 2020.8.12]</p> <p>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0조의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p>	<p>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p>

<p>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생략)</p>	<p>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p> <p>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76조(위임 및 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6조(위임 및 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p>

1.·2. (생략)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생략)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및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1.·2. (현행과 같음)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4. (현행과 같음)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1. 2. (현행과 같음)
-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

<p>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p> <p>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3.4, 시행 : 2020.3.4]</p>
<p>제76조의3(준용규정)</p> <p>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p> <p>[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3.4]</p>	<p>제76조의3(준용규정)</p> <p>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p> <p>[개정 : 2020.8.12, 시행 : 2020.10.13]</p>
<p><신 설></p>	<p>제7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p> <p>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6.5]</p>
<p>제77조(벌칙)</p> <p>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77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

<p><신 설></p>	<p>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을 수출하 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신설 : 2020.3.4, 시행 : 2020.6.4]</p>
<p>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p>	<p>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1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신 설> 3.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4. (생 략) 5. 제76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p>	<p>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6.4]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 3의2.·4. (현행과 같음)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제79조의2(벌칙)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p>	<p>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2.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p>

<p><신 설></p>	<p>3.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p> <p>[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79조의3(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p>[본조 신설 : 2018.3.27, 시행 : 2020.1.1]</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79조의3(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p>[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4.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p>[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4.5]</p> <p><삭 제></p> <p>[재개정 : 2020.8.12, 시행 : 2020.10.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p>[신설 : 2020.3.4, 시행 : 2020.4.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p>[재개정 : 2020.8.12, 시행 : 2020.10.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p>[신설 : 2020.3.4, 시행 : 2020.4.5]</p>
<p><신 설></p>	<p>제79조의4(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p>[본조 신설 : 2020.3.4, 시행 : 2020.4.5]</p>
<p>제80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p>제80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신 설>

3.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5.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7.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신설 : 2020.3.4, 시행 : 2020.4.5]

3.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삭 제>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4.5]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4.5]

6.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

7.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개정 및 신설 : 2018.3.27, 시행 : 2020.1.1]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4.5]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재개정 : 2020.8.12, 시행 : 2020.8.12]

8.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p style="text-align: center;">아니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 : 2018.3.27, 시행 : 2020.1.1]</p>
<p>제81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3.~10. (생략) <p><신설></p>	<p>제81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삭제></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p><삭제></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p>3.~10. (현행과 같음)</p> <p>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83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p><신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p>제83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p>[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p>[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3.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p> <p>[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6.5]</p> <p>4.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p> <p>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재개정 : 2020.3.4, 시행 : 2020.9.5]</p>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신 설>

-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위 1.~5. 삭제>

[개정 : 2020.8.12, 시행 : 2020.8.1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재개정 : 2020.8.12, 시행 : 2020.10.13]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 2020.8.12, 시행 : 2020.10.13]

검역법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사. (생략)</p> <p>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변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p> <p>2.~6.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사. (현행과 같음)</p> <p>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변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2.~6. (현행과 같음)</p> <p>7.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p> <p>8.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p> <p>[신설 : 2020.3.4, 시행 : 2020.3.4]</p>
<p>제5조(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변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p>	<p>제6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변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10조(검역 장소)</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p> <p>②~④ (생략)</p>	<p>제10조(검역 장소)</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p> <p>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p> <p>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p> <p>2.~5. (생략)</p> <p>②~⑥ (생략)</p>	<p>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p> <p>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p> <p>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p> <p>2.~5. (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p> <p>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p> <p>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개정 : 2020.3.4, 시행 : 2020.3.4]</p> <p>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감염병 환자등 2. 검역감염병 접촉자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p>[신설 : 2020.3.4, 시행 : 2020.3.4]</p>
<p>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역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p> <p>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1.~7. (생략)</p> <p>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생략)</p>	<p>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p> <p>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1.~7. (현행과 같음)</p> <p>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4. (생략)</p> <p>②~④ (생략)</p>	<p>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p> <p>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④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p> <p>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p> <p>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1.~6. (생략)</p>	<p>1.~6. (현행과 같음)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4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의2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34조의2(청문) 질병관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6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 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36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p>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p> <p>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p> <p>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p> <p>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p>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p>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재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개정 : 2018.3.27, 시행 : 2020.1.1]</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8조(검진)</p> <p>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p>	<p>제8조(검진)</p> <p>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p> <p>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p>

<p>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p>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p> <p>④·⑤ (생략)</p>	<p>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p>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9조(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p> <p>①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血液院)과 같은 조제8호의 혈액제제[혈액과 혈장(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③ (생략)</p>	<p>제9조(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p> <p>①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血液院)과 같은 조제8호의 혈액제제[혈액과 혈장(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10조(역학조사)</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p>	<p>제10조(역학조사)</p> <p>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13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3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p> <p>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14조(치료 권고)</p> <p>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p>	<p>제14조(치료 권고)</p> <p>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p>

<p>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1.~3. (생략)</p>	<p>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p> <p>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p> <p>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p> <p>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1조(협조 의무)</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1조(협조 의무)</p> <p>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p>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개정 : 2020.8.11, 시행 : 2020.9.12]</p>

혈액관리법

<p><신 설></p>	<p>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p> <p>①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혈관리실의 설치와 운영 및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자격요건, 인원 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12.4]</p>
<p>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p> <p>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p> <p>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2.18, 시행 : 2021.1.1]</p>
<p><신 설></p>	<p>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p> <p>① 혈액원은 혈액 공급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혈액원(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정보의 내용,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12.4]</p>
<p>제17조의2(개설허가의 취소 등)</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p>	<p>제17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p> <p>① 제6조제3항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한 자는 혈액원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4. 혈액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혈액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③ 혈액원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혈액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입·지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혈액원별로 혈액원의 사업계획·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수입·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및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12.4]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 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3(개설허가의 취소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4. 혈액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 5. 혈액원이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12.4]</p>
<p><신 설></p>	<p>제17조의4(적용의 배제)</p> <p>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 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3, 제13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12.4]</p>
<p>제21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p>	<p>제21조(벌칙)</p> <p>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12.4]</p>
<p>제23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3. (생 략)</p> <p>4. 제1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23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p> <p>[개정 : 2020.2.18, 시행 : 2021.1.1]</p> <p>6. 제1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신설 : 2019.12.3, 시행 : 2020.12.4]</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개정 : 2020.2.18, 시행 : 2021.1.1]</p>

국민건강보험법

<p>제54조(급여의 정지)</p> <p>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4. (생략) 	<p>제54조(급여의 정지)</p> <p>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p>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4. (현행과 같음) <p>[개정 : 2020.4.7, 시행 : 20207.8]</p>
<p><신설></p>	<p>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행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p>
<p>제69조(보험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 	<p>제69조(보험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

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⑥ (생략)

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3조제1항제2호가 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개정 : 2019.12.3, 시행 : 2020.6.4]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개정 및 신설 : 2020.4.7, 시행 : 2020.7.8]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신설>

<신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후단 삭제>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

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후단 삭제>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및 신설 : 2019.1.15, 시행 : 2020.1.16]

제86조(보험료등의 총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그 과오납금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86조(보험료등의 총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및 신설 : 2019.12.3, 시행 : 2020.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p>제14조(광고)</p> <p>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4조(광고)</p> <p>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단서 삭제></p> <p>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개정 및 신설 : 2020.3.31, 시행 : 2020.10.1]</p>
<p>제5장 마약류 중독자</p>	<p>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p> <p>[개정 : 2019.12.3, 시행 : 2020.12.4]</p>
<p><신 설></p>	<p>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p> <p>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p> <p>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p> <p>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p>

	<p>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p> <p>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2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12.4]</p>
--	---

<p><신설></p>	<p>제40조의3(판결 전 조사)</p> <p>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病歷),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12.4]</p>
--------------------------	--

<p>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p>	<p>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p>
---	--

<p>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p> <p>1.~3. (생략) ②·③ (생략)</p>	<p>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개정 및 신설 : 2020.3.31, 시행 : 2020.10.1]</p>
<p>제46조(과징금처분)</p> <p>①~③ (생략)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생략)</p>	<p>제46조(과징금처분)</p> <p>①~③ (현행과 같음)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개정 : 2020.3.24, 시행 : 2020.3.24]</p>
<p><신설></p>	<p>제65조의2(벌칙)</p> <p>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본조 신설 : 2019.12.3, 시행 : 2020.12.4]</p>